

의안번호	제251호
------	-------

발 의 연 월 일
2024. 3. 4.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심완예 의원 외 2인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완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51호
----------	-------

발의연월일 : 2024년 3월 4일
발의자 : 심완예, 이길원, 장순관
의원(3인)

1. 제안이유

예산군의회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규정하여 재정 건전성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비용추계서의 정의(안 제2조)

-기존: 예산군수가 제출한 의안

-변경: 예산군수가 제출하거나 예산군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한 의안

나. 비용추계의 요청 신설(안 제4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 「지방자치법」 제7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2024. 3. 5. ~ 3. 11. [7일간]
- 3) 성별영향평가 : 【붙임 2】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예산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발의한” 을 “예산군의 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예산군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예산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발의·제안 또는 제출한”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원·위원회·군수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 을 “별지 제2호서식” 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비용추계의 요청 등) 의원 또는 위원회는 비용추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비용추계 요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세입	○						
	○						
	소계(a)						
구분 세출	○						
	○						
	소계(b)						
□ 총 비용(a-b)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국 비						
	군 비						
	민 간						
	기타(지방채, 기금, 예 치금 회수 등)						
	합 계						

5. 덧붙이는 의견
6. 작성자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작성요령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예산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련 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재정부담 주체별, 항목별 및 연도별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4. 재원조달 방안 : 재원의 조달방안은 국비, 군비, 민간, 지방채, 기금 및 예치금 회수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5. 덧붙이는 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6. 작성자 :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부서명 또한 작성자의 이름과 그 연락처를 기재한다.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추계의 방법, 비용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4. 작성자

[별지 제3호서식]

의안비용추계 요청서

수 신 :

의안명 :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
안 비용추계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의원 · ○○○○위원회 위원장 ○ ○ ○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비용추계서”란 <u>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u></p> <p>2. · 3. (생략)</p> <p>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u>군수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1. ~ 3. (생략)</p> <p>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u>별지 제2호 서식</u>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 <u>예산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예산군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의·제안 또는 제출한</u> ----- -----.</p> <p>2. · 3. (현행과 같음)</p> <p>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u>의원·위원회·군수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u>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 <u>별지 제2호서식</u>----- -----.</p> <p>제4조의2(비용추계의 요청 등) 의원</p>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또는 위원회는 비용추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의 의안비용추계 요청서를 작성하
여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붙임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법률 제19241호, 2023. 3.21., 일부개정]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법제처 의견 제시 사례** [의견12-0005]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이 의결될 경우 그 의안 자체가 예산 또는 기금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을 초래하게 되므로, 해당 의안을 심사할 때 미리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 또는 기금 지출과 관련된 사항을 해당 의안의 심사 과정에서 반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제1항의 목적 및 취지를 감안할 때, 위 규정에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제출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였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해서만 이를 제출하도록 제한하거나, 「지

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붙임 2】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



예 산 군



수신 예산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4A충남예산003)

1. 충청남도 예산군 의회사무과 - 643 (2024. 1. 24.) 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하므로,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예 산 군



주무관	이용미	여성가족팀장	정유경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전결 2024. 1. 26.
협조자						
시행	가족지원과-4591	(2024. 1. 26.)	접수	의회사무과-695	(2024. 1. 26.)	
우	3243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가족지원과	/	www.yesan.go.kr		
전화번호	041-339-7912	팩스번호	041-339-7909	/ greentea83@korea.kr	/	대국민 공개

인구가 힘이다! 예산짱 살아요!